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 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 하위 법령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수수료 등 일부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세부 절차 규정 (안 제33조의2)

출항·입항에 대한 기록관리 대장 작성, 승선신고서 작성 및 보관,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근거 규정, 관련 서식 마련

나. 감정평가업자 지정 기준 마련 (안 제17조의2)

토지 등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 및 추첨을 통한 지정 방식, 사업시행자 결과 통보 등 규정

다. 수수료 조항 개정 (안 안 제36조 및 별표 4 삭제, 관련 별지 개정)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 관련 하위법령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 변경

라. 선수금 수령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변경 (안 별표 3 개정)

위반 행위 발생 시 부과하던 경고 처분을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경고, 3차 위반 공사중지 하는 등 제재 수준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3. ~ 6. 2.)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4조제3항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일시 및 추천 장소
 4. 지정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신고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고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둘 이

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의2(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선박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28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으로 신분 확인

2.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승선신고서에 승선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보호자의 이름을 적은 후 보호자 동승여부 확인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해당 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신고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 승선신고서의 제출·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3호의 행정처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차 위반	2차 위반
시정 명령	공사 중지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20,000원”을 “없음”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10,000원”을 “없음”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휴업·폐업 : 무료 재개업 : 10,000원”을 “없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4조제3항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해야 한다.</u> <u>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u> <u>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u> <u>3.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일시 및 추천 장소</u> <u>4. 지정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u> <u>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u> <u>6. 감정평가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신고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u> <u>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u>

<신 설>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고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의2(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

라 선박의 출항·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선박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으로 하여금 제28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으로 신분 확인

2.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승선신고서에 승선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보호자의 이름을 적은

후 보호자 동승여부 확인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해당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신고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 승선신고서의 제출·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마리나선박 명세

사업기간

요금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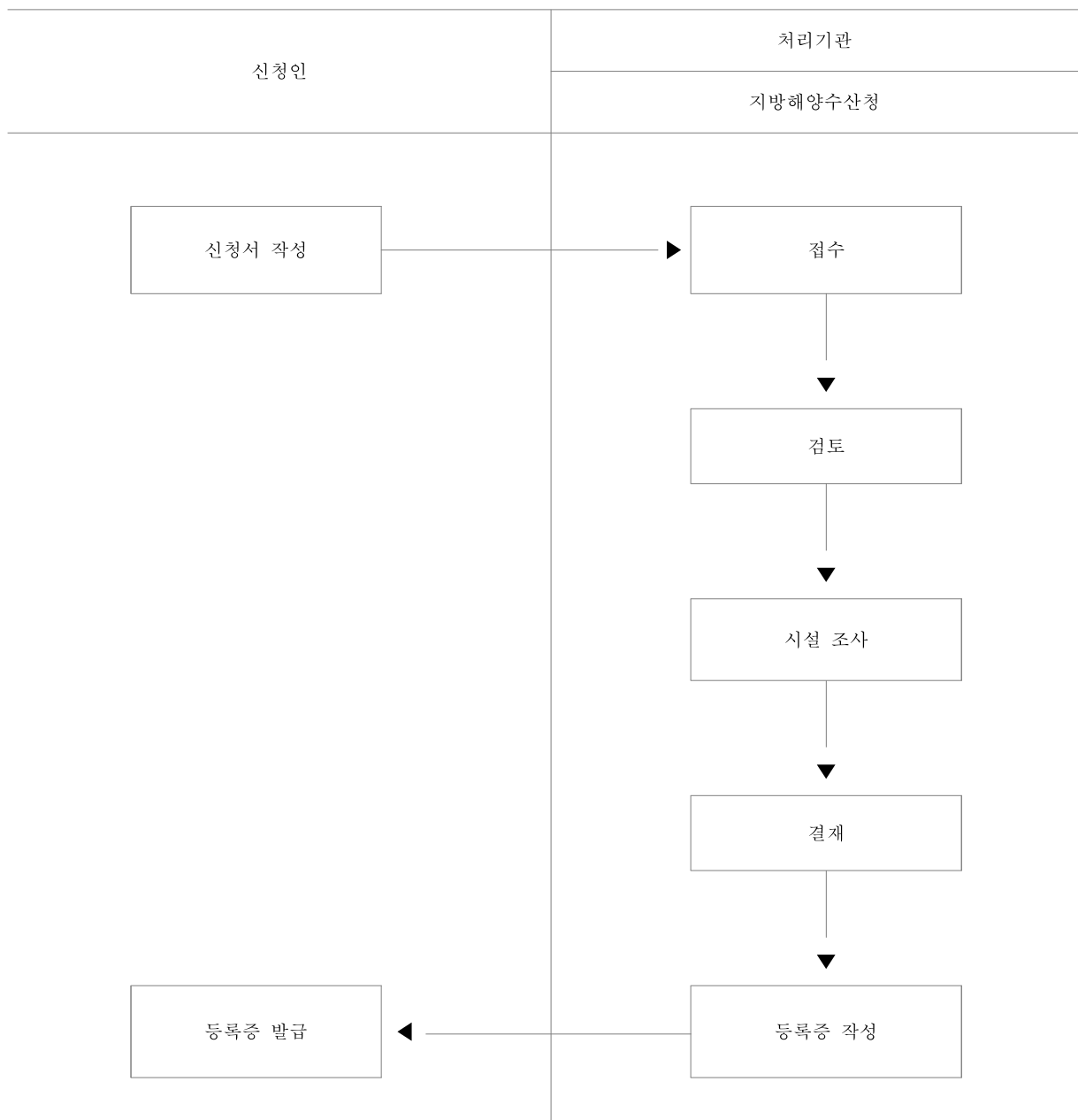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보관·계류시설 명세

사업기간

요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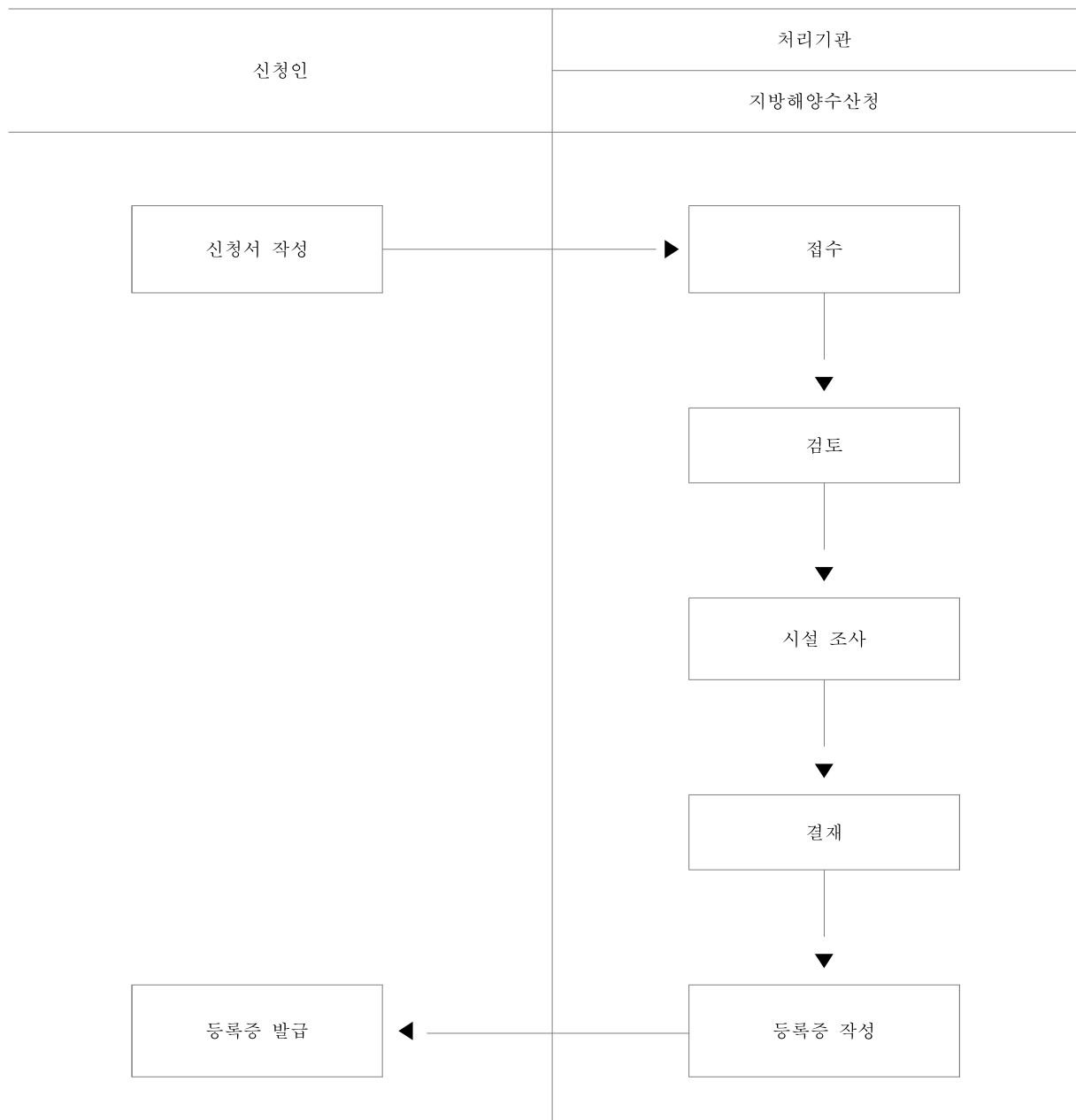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변경등록신청서 [] 마리아선박 대여업 []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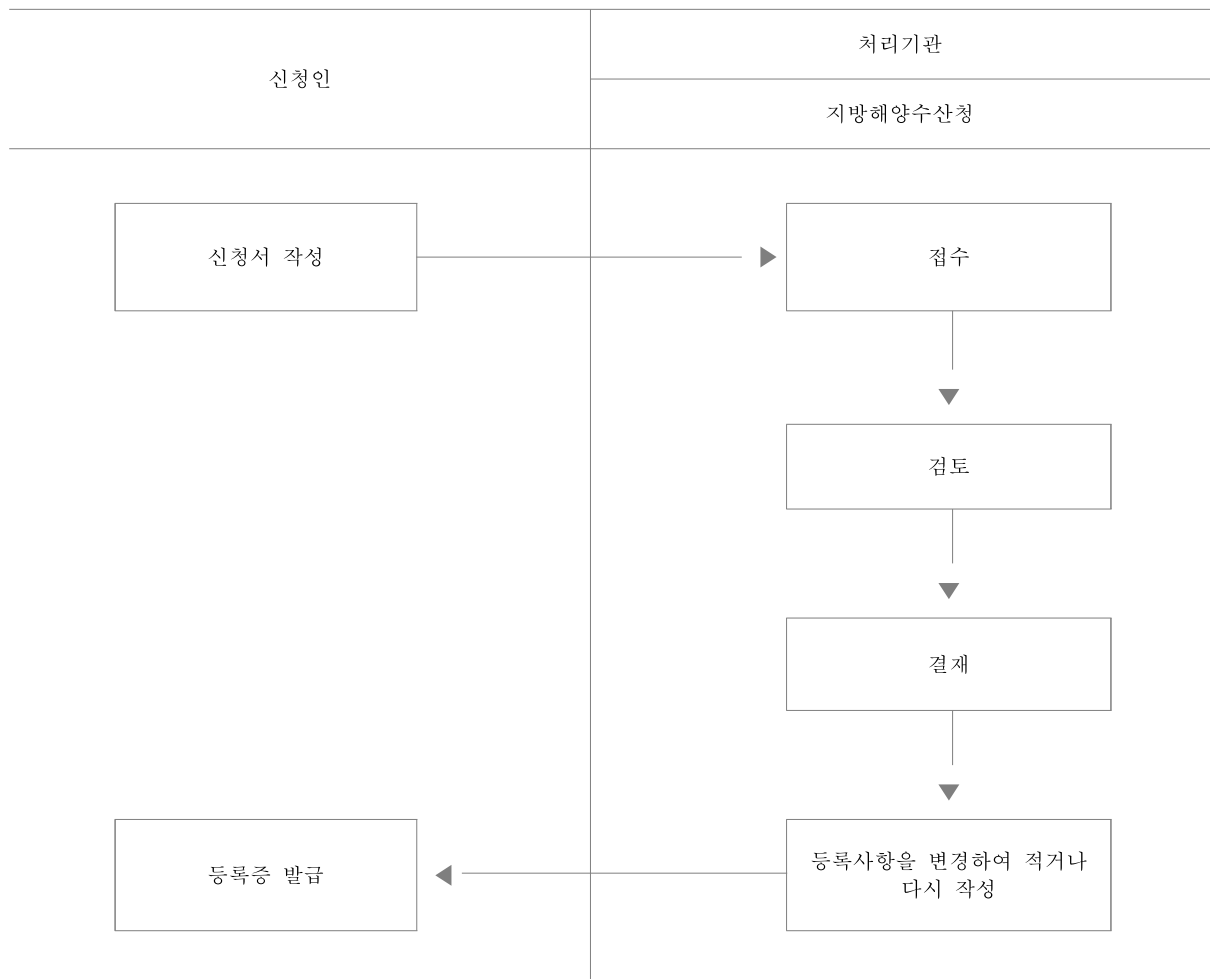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 대여업
[] 보관·계류업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지위 승계(합병) 일자			
지위 승계(합병)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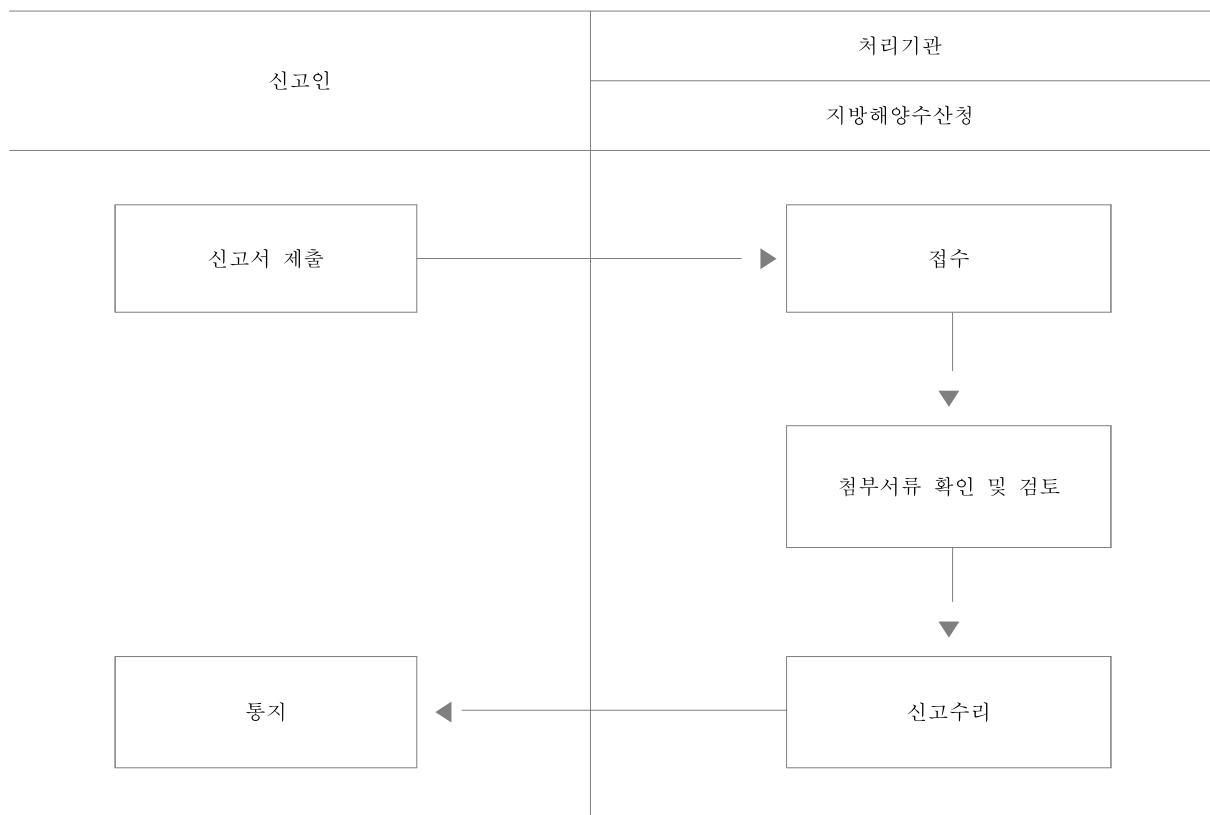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

[] 휴 업

[] 재개업

[] 폐 업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마리나선박 명세

신 고 사 항	휴업(폐업·재개업) 날짜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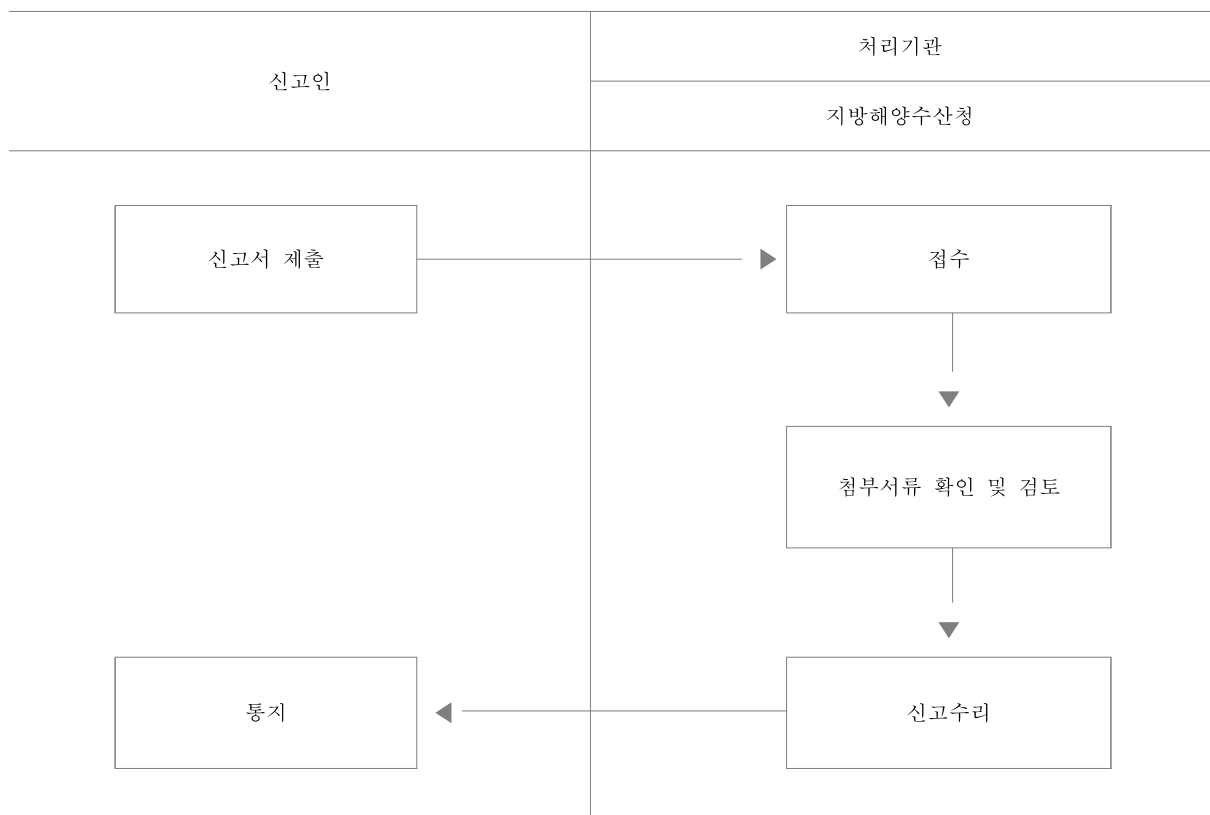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리나선박 대어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 18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보관·계류시설 명세

부대시설 명세

신고사항	휴업(폐업·재개업) 날짜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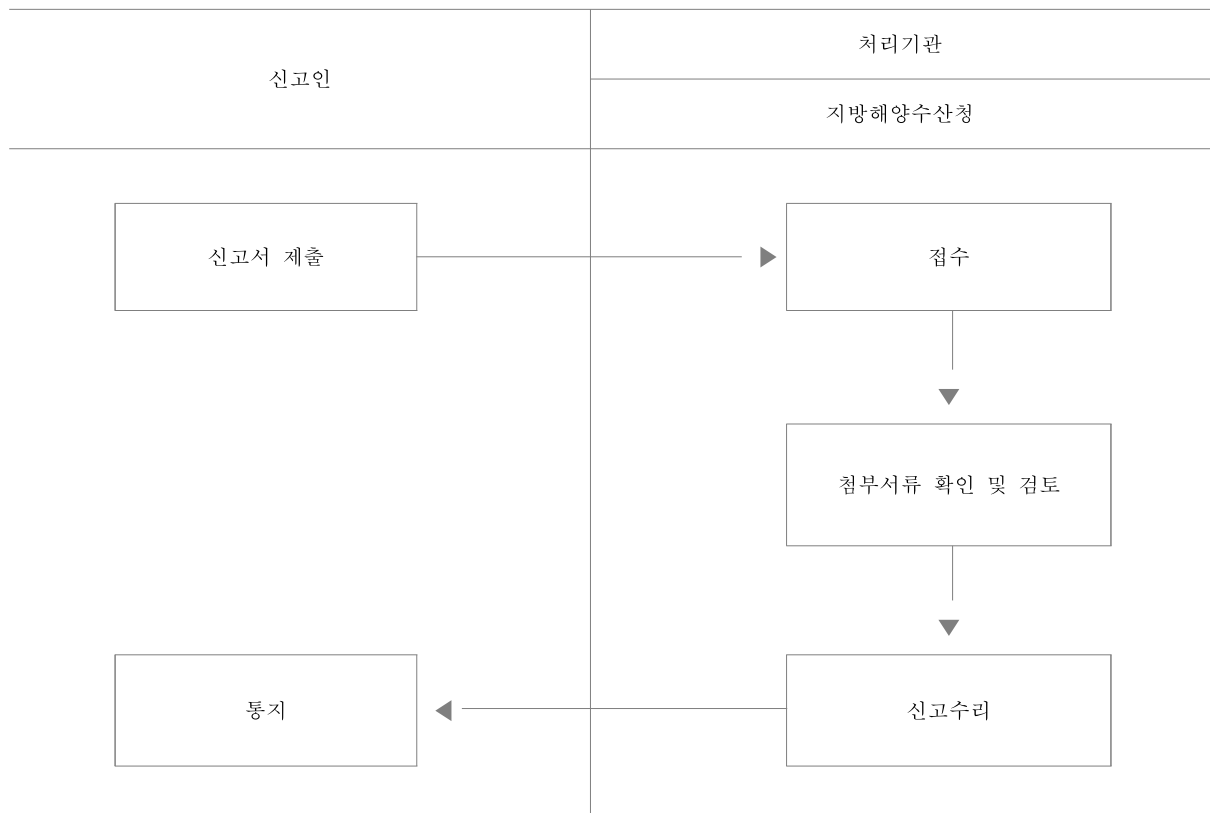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선박 출항·입항 기록·관리 대장

1. 선박 제원 및 승선 인원 현황						
선명			톤수	톤		
승선 인원	승객 :		선원 :			
2. 출항·입항 사항						
출항			입항			기록자
일시	출항지	승선인원	일시	입항지	하선인원	

승선신고서

1. 선박 제원 및 승선 인원 현황					
선 명				톤 수	톤
승선 인원		승객 :		선원 :	
2. 승선자 및 출항·입항 사항					
출항일시 :		출항지 :		입항일시 : 입항지 :	
연번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고

〈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연 락 처	(044) 200-5275